

의안번호	제 51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살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#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51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 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 → 제38조(안 제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##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의3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34조</u>의 3 규정에 의한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38조에 따른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38조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